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동차자기인증교육 이수 의무화〉

■ 권영진의원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87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권영진의원·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87호) …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자동차자기인증교육 이수 의무화(안 제32조의3 신설 등)	2

□ 권영진의원·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87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영진의원·복기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13.
3. 회 부 일 : 2026.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여야 하나,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제원 미통보,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검사대행자, 자동차가격조사·산정자 및 자동차매매업 종사원 등에 대한 교육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 또한 자동차자기인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 및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함.

이에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을 향상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제72조제1항제5호의2, 제84조제4항제14호의2 신설 및 제52조).

Ⅲ. 검토의견

1. 자동차자기인증교육 이수 의무화(안 제32조의3 신설 등)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교육 등) ① 자동차 판매를 목적으로 제30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주기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자기인증에 관한 교육(이하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자기인증교육에 대한 이수 여부 등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자동차자기인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자동차자기인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에 소요

[illegible]

현행	개정안
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u>5의2.</u> (생략) 6. ~ 16. (생략) ② ~ ④ (생략) 제84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4. (생략) <u><신설></u> 15. ~ 24. (생략) ⑤·⑥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자기인증 교육기관</u> <u>5의3.</u>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6.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4. (현행과 같음) <u>14의2. 제32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u> 15. ~ 24.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함)하여야 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을 통보하고 자동차자기인증 표시를 하여야 함²⁾.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자기인증 체계>



그런데 자동차자기인증은 정부가 사전에 적합 여부를 직접 검사하고 승인하는 형식승인 제도와 달리 자동차제작자등이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인증하는 자율책임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자동차제작자등의 인증 관련 전문성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 사항임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교육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기술인력,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자동차매매업 종사원 등에 대한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자기인증을 직접 수행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교육 의무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2025년 기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이라 함)은 총 13,582개사(자동차 11,351개사, 이륜자동차 2,231개사)이며, 이 중 최근 3년간 제원을 통보³⁾한 제작자등은 1,351개사(자동차 1,250개사, 이륜자동차 101개사)임.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원의 통보) ①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 전 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에 따른 제원의 허용차 범위 이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별지 제26호의22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제40조의26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됨을 증명하는 자료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결과를 월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제작자등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자동차제작자등	이륜자동차제작자등	합계
합계(A+B)	11,351	2,231	13,582
판매 목적(A)	9,112	1,944	11,056
자가 목적(B)	2,239	287	2,526
최근 3년간 제원 통보	1,250	101	1,351

자료: 국토교통부(2025년기준)

최근 3년간 판매 목적으로 제원을 통보한 제작자등을 국내제작, 국내조립, 지정수입, 개별수입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대기업 중심인 국내제작·지정수입에 해당하는 제작자등은 112개사(8.3%, 자동차 77개사·이륜자동차 35개사)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국내조립·개별수입에 해당하는 제작자등이 1,239개사(91.7%, 자동차 1,173개사·이륜자동차 66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및 자동차자기인증 절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제작자등을 대상으로 자동차자기인증 교육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최근 3년간 판매 목적으로 제원을 통보한 자동차제작자등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국내제작	국내조립	지정수입	개별수입	합계
자동차	8	891	69	282	1,250
이륜자동차	3	24	32	42	101

자료: 국토교통부(2023~2025년)

또한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원통보 건수는 총 27,636건인 데 반해 제원정정 건수가 9,630건(전체 통보 건수 대비 약 3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25년에는 제원정정 건수(5,443건)가 전년(2,432건) 대비 약 2.2배 증가하여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통한 제원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자동차 제원통보 및 정정 처리 현황>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제원통보 건수(건)	11,020	8,589	8,027	27,636
제원정정 건수(건)	1,755	2,432	5,443	9,630

자료: 국토교통부(2023~2025년)

특히 소규모 제작자등의 경우 안전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원 미통보,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수입, 사후관리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예방할 제도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동차자기인증 시범교육이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참여 업체 수가 2023년 162개사(743명), 2024년 102개사(364명), 2025년 110개사(399명)에 불과한 실정임.

<자동차자기인증 교육 시범실시 현황>

실시시기	실시 대상	실시 기관	소요 비용 ⁴⁾
2023.2.27.~12.31.	자동차제작자등 162개사 (743명)	한국교통안전공단	1억 5천만원 (전북 1억원, 김제시 5천만원)
2024.3.15.~12.31.	자동차제작자등 102개사 (364명)	한국교통안전공단	1억 5천만원 (전북 1억원, 김제시 5천만원)
2025.4. 8.~12.31.	자동차제작자등 110개사 (399명)	한국교통안전공단	1억 5천만원 (전북 1억원, 김제시 5천만원)

자료: 국토교통부(2025년 기준)

이에 개정안은 제작자등에 대한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다음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첫째, 자동차자기인증제도의 구조적인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자동차자기인증제도는 제작자등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사전 자율 규제 방식으로, 제작자등이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하는 구조임. 이러한 구조에서 제작자등이 자기인증 관련 법령 및 안

4)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2항에 따른 제작자등록을 완료한 제작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교육 시범운영 및 지자체 예산출연으로 지원하고 있음.

전기준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가 시장에 유통될 위험이 있음.

이에 자동차자기인증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작자등의 인증 전문성을 제고하는 교육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소비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

제작자등의 인증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인증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셋째, 사후 제재 중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현행법은 자기인증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⁵⁾ 및 과태료⁶⁾ 등 사후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이 이미 시장에 유통된 이후의 사후적 대응에 불과한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조

5) 「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6)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치 의무를 부과⁷⁾하고 있으나, 이 역시 결함 발생 이후의 사후적 수단에 해당하여 사전 예방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자동차자기인증 교육 의무화는 제작자등이 자기인증 단계에서부터 안전기준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 제재 중심의 제도를 사전 예방적 수단으로 보완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 제32조의3은 교육을 받아야 할 주체로 “자동차제작자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교육 이수 주체로 검사기술인력,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동차매매업 종사원을 교육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7)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소비효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2의2.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교육 대상	근거 조항
검사기술인력	제46조의2(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검사기술인력 은 주기적으로 그 구분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 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⑧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 (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자동차매매업 종사원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 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한편, 현행법은 검사기술인력,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자동차매매업 종사원의 교육 이수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검사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의무 위반 시 제재>

교육 대상	교육 의무 근거	위반 시 제재	제재 근거
검사기술인력(자동차검사교육 미이수)	「자동차관리법」 제46조의2제1항	검사대행자 등에 대한 해당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명령 또는 직무정지 명령	「자동차관리법」 제46조제2항제9호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 (준수사항 교육 미실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6항제4호	과태료 300만원 이하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1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교육 미이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8항제3호	과태료 100만원 이하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22호의3
자동차매매업 종사원 (준수사항 교육 미실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4호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아목

이에 개정안에서 자동차자기인증 교육 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자동차자기인증 교육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교육 미이수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이륜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자기인증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동차자기인증교육 의무가 준용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자기인증에 대한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은 이륜자동차제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인증교육을 통해 자동차제작자등의 인증제도 및 안전기준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부담을 감소하고, 자동차제작자의 인

증 전문성을 향상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또한 현재도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 교육을 실시 중으로, 교육 의무화로 신속하게 교육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인증교육 실시로 자기인증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자동차자기인증 교육 의무화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한 과태료 금액을 산정함.

문 의 처
02)6788-5575